

제190회 거창군의회

<임 시 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원발의

조 례 안 상 정

강철우 의원 외 3인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3~18
----------	---------

제출일자	2013. 03. 11.
제 출 자	강철우, 김재권, 백범영, 류영수 의원

1. 제안이유

○ 영농폐기물을 수집한 자에게 수집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참여의식을 높여 영농폐기물 수집을 촉진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청정거창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법률, 중앙부처명 등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 개정내용 반영
(안 제2조, 제6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 영농폐기물 수집 장려금 및 포상 규정 신설(안 제24조)

-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장려금 지급
-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수거활동 전개
-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1) 「지방자치법」 제9조

(2)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4조·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3·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8조

나. 예산 조치 : 2013년도 226,250천원 편성

다. 집행부의견조회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 2013. 3. 12 ~ 3. 18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붙임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제11조제3항·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3항 중 “시행규칙 제17조”를 “시행규칙 제28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31조를 삭제하고,

제30조를 제25조로 하고, 제32조·제33조를 제26조·제27조로 하며, 제25조 앞에

제7장(보칙)을 삽입하고, 제6장 및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장 장려금 등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

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제8호서식·제10호서식·제11호서식, 별표 7을 삭제하고, 별표 2·5·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함은 사업장폐기물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12. (생략)</p> <p>14. (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 등)</p> <p>① 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외지역 중 다인이 모이는 공원·유원지·등산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지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자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 -----</p> <p>3. ~ 6.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p> <p>군수는 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p> <p>2. 산간·오지지역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p> <p>제11조(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72 300 339 338">⑤ (생략)</p> <p data-bbox="172 389 785 786">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생략) ② 군수는 법 제25조 및 <u>시행규칙 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폐기물관리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u>시행규칙 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설등을 추가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 data-bbox="172 1111 785 1373">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4조제3항</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 4. (생략)</p> <p data-bbox="172 1426 339 1464">② (생략)</p> <p data-bbox="172 1516 785 1599">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생략)</p> <p data-bbox="172 1608 785 1957">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으로써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u>환경처</u> 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안내판 설치 및 행사객 홍보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09 300 1208 338">③ (현행 제5항과 같음)</p> <p data-bbox="809 389 1422 517">제13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시행규칙 제28조</u>----- ----- ----- ----- ----- ----- -----</p> <p data-bbox="809 797 1422 969">③ ----- ----- -----<u>시행규칙 제28조</u>----- ----- -----</p> <p data-bbox="809 1111 1422 1238">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u>법 제14조제4항</u>----- ----- ----- -----</p> <p data-bbox="809 1384 1169 1464">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09 1516 1422 1599">제2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환경부</u>-----</p>

현 행	개 정 안
<p><u>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u> <u>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u></p> <p><u>제25조(의견청취)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규정을 준용한다.</u></p> <p><u>제26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포상금 지급등) ①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 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7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u></p>	<p><u>제6장 장려금 등</u> <u>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폐비닐, 반사 필름, 농약용기-봉지, 병, 플라스틱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지정하여 영농폐기물 수거활동을 전개한다.</u> <u>③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집활동 우수 기관·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포상을 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 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 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6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군수는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금액의 50%까지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포상금은 현금이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포상금은 1회 2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③ 신고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 적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한다.</p> <p>④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한 신고시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p>	<p><삭 제></p>
<p>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p> <p>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p>	<p><삭 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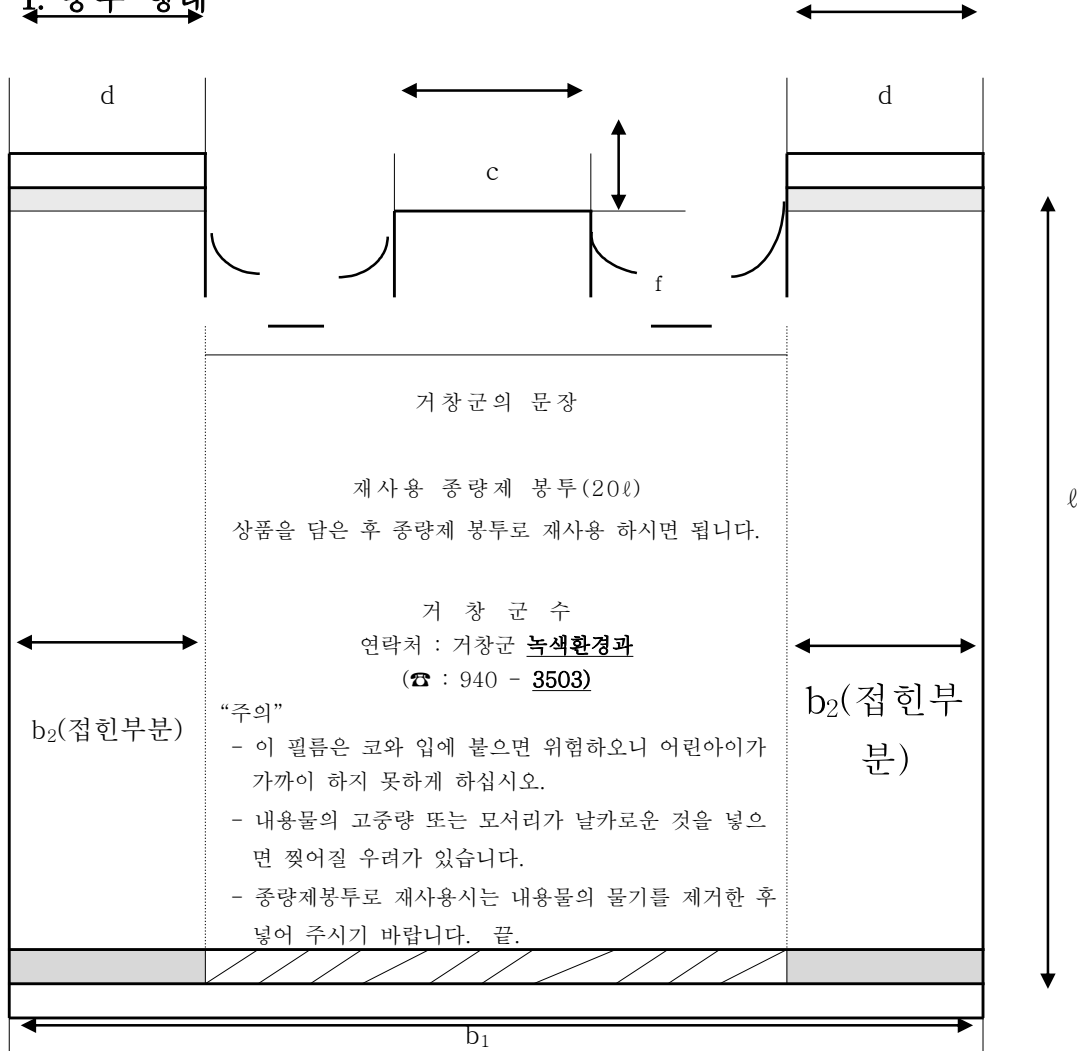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28조(과태료의 귀속 및 강제징수) ①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p>	<p><삭 제></p>
<p>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신 설></p>	<p>제7장 보칙</p>
<p>제30조(생 략)</p>	<p>제25조(현행 제30조와 같음)</p>
<p>제31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p>	<p><삭 제></p>
<p>제32조(생 략)</p>	<p>제26조(현행 제32조와 같음)</p>
<p>제33조(생 략)</p>	<p>제27조(현행 제33조와 같음)</p>

【별표 2】

쓰레기봉투의 사양

□ 재사용봉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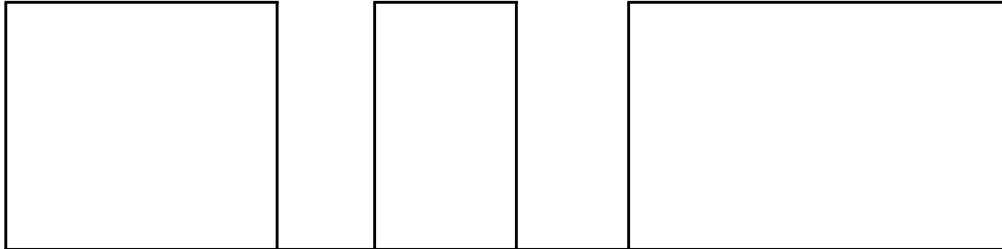
1. 봉투 형태



비고 1. l 은 봉투의 높이, 봉투의 나비는 접힌부분을 펼친 전체나비 $b_1 + 2b_2$ 로 하고, b_1 은 봉투의 마무리 나비, b_2 는 접힌부분의 접혀 들어간 나비, c 는 묶는선 폭, d 는 손잡이끈 폭, f 는 묶는선 길이임.

2. 그림중의 사선부분 및 검게 칠해진 부분은 열접합 부분을 나타내고 사선부분은 평접합 부분을 검게 칠해진 부분은 거릿접합 부분을 나타냄.

□ 음식물전용봉투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거창군 로고)

쓰레기 봉투 (Oℓ)
-음식 쓰레기 전용 -

1. 이 봉투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입니다.
2. 과일껍질, 채소찌꺼기, 음식찌꺼기등 음식물 쓰레기의 물을 꼭 짜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거 창 군 수

연락처 : 거창군 녹색환경과
연락처(940-3503)

이 봉투는 공업진흥청의 재정승인을 받은 단체표준 한국프라스틱
규격 제품임.

제작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별표 5】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배출 및 수수료 징수 기준

(단위 : 원/개당)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 전 제 품 류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	6,000
		300ℓ미만	4,000
	텔레비전	42인치이상	5,000
		12인치이상	3,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에어컨	264㎡이상	10,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가 구 류	장농	90cm이상 1쪽	15,000
		90cm이상 1/2쪽	8,000
		90cm미만 1쪽	10,000
		90cm이상 1/2쪽	5,000
	서랍장식장	1대당	5,000
	서랍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2,000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이하	4,000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	모든규격	4,000
	응접테이블	1대당	4,000
응접세트	장의자	5,000	
	의자	2,000	
침대	1인용	10,000	
	1인용매트리스	5,000	
	1인용프레임	5,000	
	2인용	15,000	
	2인용매트리스	8,000	
2인용프레임	7,000		
전축케이스	1개당	3,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가 구 류	책상	양수,대형 편수,소형	5,000 4,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문갑	모든규격	3,000
	쇼파	1인용 소형4인용 대형6인용이상	5,000 7,000 10,000
	밥상	4인이상 4인미만	3,000 2,000
	싱크대	모든규격	5,000
	책꽂이	모든규격	3,000
	의자	모든규격	3,000
	옷걸이(행거)	모든규격	2,000
생 활 용 품	캐비닛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닛	4단이상 3단이하	3,000 2,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쌀통	80kg(용량)이상 80kg(용량)미만	4,000 3,000
	벽시계	1m이상 1m미만	5,000 3,000
	인형류	5kg기준	2,000
	장난감류	5kg기준	2,000
	가방	1개당	2,000
	액자	1개당	4,000
	진열대	1개당	2,000

	종 별	규 격	처리비
기 타	문짝	1쪽당	5,000
	수족관	100cm이상	7,000
		100cm미만	4,000
	거울	1개당	3,000
	자전거	유아용	4,000
		어른용	5,000
	운동기구	<u>1m이상</u>	<u>5,000</u>
		<u>1m미만</u>	<u>3,000</u>
	의료기기	<u>1m이상</u>	<u>5,000</u>
		<u>1m미만</u>	<u>3,000</u>
	유모차	모든규격	4,000
	깨진 유리	10kg기준	2,000
	항아리	1개당	3,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변기통 (물탱크포함)	모든규격	5,000
	<u>이동식변기통</u>	<u>1개당</u>	<u>10,000</u>
	<u>찬장</u>	<u>1대당</u>	<u>3,000</u>
	<u>가스렌지받침대</u>	<u>모든규격</u>	<u>2,000</u>
	<u>고무통</u>	<u>1개당</u>	<u>5,000</u>
	<u>욕조</u>	<u>모든규격</u>	<u>3,000</u>
	장판	1평당	3,000
	<u>물탱크</u>	<u>kg당(1톤탱크 : 26kg)</u>	<u>280</u>
	카펫	1평당	2,000
	<u>이불</u>	<u>1개당</u>	<u>2,000</u>
	목재	20kg기준	2,000
	플라스틱류	10kg기준	2,000
	재봉틀	1개당	5,000
	탁구대	1개당	5,000
	병풍	1개당	2,000
	간판	60×180cm이상	7,000
60×180cm미만		4,000	
입간판		3,000	
건설폐기물	톤당	28,000	
롤온박스	1대당	100,000	

【별표 6】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2조 및 제7조 관련)

종류	품목	배출요령
1.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팩,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과자, 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비닐코닝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닝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2. 캔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후 가능하면 압착 - 걸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한 배출
3.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수병, 기타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등 이물질은 넣지 말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4. 영농폐기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후 유리별, PET병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폐비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
5. 고철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6. 플라스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ET병 - 우유병, 요쿠르트병 등 병 모양의 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스티로폼, 농·수산물 포장상자 포장용,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퍼스널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판매자 등이 직접 회수하여 배출 - 수산용 폐부자, 음식물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틀질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받침용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가능 표시제품 또는 지역 여건상

	접시류, 가정용 생활용품류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을 배출
7. 의류	- 면섬유류 - 기타의류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배출
8.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후 음식찌꺼기	- 약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행구어 배출 - 비닐 병뚜껑 폐각류 등 재활용은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배출
9. 기타류	-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이불류, 카페트, 장판류, 호우스, 파이프, 폐식용유 등
10. 형광등	형광등	- 지역별 배출용기에 배출 -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배출
11.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 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1차전지)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12. 합성 수지류	PET,PCV,PE,PP,PS,PSP재질의 용기 포장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스티로폼완충재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 수지 포장재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나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13. 비닐 봉투류	- 1회용비닐봉투	- 1회용 비닐봉투만을 따로 모아 일정한 양이 되면 배출 -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흰색봉투와 검은색 봉투 등 분리하여 같은 색상의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 이물질과 수분을 제거후 배출 ※ 음식물쓰레기 등 이물질을 담았던 비닐봉투는 제외
14. 가전 제품류	- 대형가전제품(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을 제외한 가전제품	- 읍면사무소 또는 아파트 내 소형가전제품 분리 수거함에 배출 - 전지 등 을 분리하지 말고 여타 재활용품과 같이 배출

거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는 자에게 장려금 지급

나. 관련 조문

- 제24조(장려금 및 포상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영농폐기물을 수집하여 배출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3년)	2차년도 (2014년)	3차년도 (2015년)	4차년도 (2016년)	5차년도 (2017년)	합계	
총 비용(a - b)	226	236	247	259	271	1,239	
세출	도 비	15	15	15	15	75	
	군 비	211	221	232	244	256	1,164
	소계(a)	226	236	247	259	271	1,239
세입							
	소계(b)						

3. 관련 의견

- 영농폐기물 수집 물량 증가(평균 5% 적용)로 장려금 지급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 영농폐기물 품목별 장려금 지급단가를 정하여 수집량에 따라 지원(수집량은 수집활동 실적에 따라 변동됨)
- 2013년도 예산확보액 : 226,250천원 (도비 15,000, 군비211,250)

작성자 : 녹색환경과장 김 삼 수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11.7.14>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물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폐기물관리법」

[시행 2012.7.22]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 ~ ③ (생략)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⑥ ~ ⑧ (생략)

제68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12.27] [대통령령 제24266호, 2012.12.27, 일부개정]

제38조의3(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4.6][제38조의2에서 이동 <2012.1.6>]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 [환경부령 제464호, 2012.7.3, 일부개정]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 ⑦ (생략)

<개정 2007.10.25.전부개정 : 제17조에서 조문변경>